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

2014. 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재단
법인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 실시 계획

□ 추진 배경

-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탈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 및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변화 모색
 - 자활사업전환모델 개발을 위하여, '14. 8월부터 전국 지역자활센터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전환 시범사업관련 질의 응답,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14. 6. 27(금), 14:00~16:00
 - 장소 : 대전복지재단 9층 대회의실
- 설명회 참석 대상
 - 복수(2~3곳) 지역자활센터 설치 지자체 공무원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검토 중인 센터가 위치한 지자체 공무원
- 주요 내용
 - 지역자활센터 법인 유형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기능 전환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의견 수렴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 : 00 ~ 14 : 10	참석자 등록 · 접수	중앙자활센터
14 : 10 ~ 14 : 30	시범사업 의의 설명	보건복지부
14 : 30 ~ 15 : 30	시범사업 운영 방안 설명	중앙자활센터
15 : 30 ~ 16 : 00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14. 6.

증 양 자 활 센 터

CONTENTS

I. 추진 배경	1
II.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5
III.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9
IV. 기능전환 시범사업	15
V.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23
 〈붙임〉 1.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일정(안)	
2. 기존 자활사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비교표	
3. 사회적 협동조합 표준 정관(안)	
4.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비교표	

I. 추진 배경

I. 추진배경

□ 정부는 '13.12.24일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고용-복지 연계 정책 강화방안」을 논의·확정

- 사회안전망으로서 자활사업이 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빈곤층 전략 예방을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을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개편(~'16년)

- 지역자활센터를 '탈수급 집중형', '사회서비스공급형', '사회적경제지원형' 등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형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
- 시군구 복수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의 규모화 추진

('13. 12. 24.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

□ 자활 인프라 개편 정책목표인 일을 통한 탈빈곤 강화, 사업수행의 효과성 증대 제고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전문화,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사회적경제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화 필요

-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 자활사업단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활근로사업위탁을 통하여 참여자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사업 성과제고에 기여
 - * 사회적경제 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국자활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자활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

Ⅱ.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II.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 '14년 8월부터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희망하는 센터 중심으로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실시

1. 사업 개요

- (시기) 14. 8월~
- (대상)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중 시범사업 참여 희망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기초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희망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수행 및 공모 진행

2. 단계별 운영방안

□ 정책목표

- 지역자활센터가 자체 운영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지원 및 전달체계의 이행 구조 확보
- 그간 자활사업의 사회적 공익성 및 효용성 등 성과를 극대화하고 자활사업 수행의 안정성 확보
-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고유역할 증대
- 빈곤층에게 적합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지역자활센터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기회 확보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준비, 추진 과정상 필요한 규정 및 지침 정비
- (중앙자활센터) 시범사업 추진 과정 전반 실무 총괄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기관 관리 운영
-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문위원단 운영
- 시범사업 과정 평가 및 장기 운영 계획 수립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유형 전환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 대상 협동조합 일반 교육
- 필요시 광역단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무국 역할 수행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 모니터링 지원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 지원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자활근로 수탁
- 복수 설치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일 자	장 소	대상 지역	참석 대상자
6/27	대전복지재단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지역자활센터 법인 전환 희망 지역	지자체 공무원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의 취지 및 내용 설명

- 시범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의견 수렴

□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광역자활센터 활용

Ⅲ.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Ⅲ.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 (시범사업 규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 준비가 된 센터 중심으로 선정
 - 현장설명회 및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
 - 매출액, 모법인의 관계, 지자체 지원, 종사자 관심도 및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시범사업 대상 기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자문위원단 공동 마련
-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공모·선정 후 집체 교육 실시
 -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자체, 컨설팅 기관
 - 시범사업 매뉴얼 배포 및 교육, 담당 컨설턴트 배정
- (조합형태)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자활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필수 참여하며, 모법인은 해당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참여
 - 자활기업은 법인, 대표자 및 참여자 등이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또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자활근로참여자가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
 - 필요시 예비 조합원 제도를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하여 활용

□ (직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유급으로 채용한 자

- 기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 자활기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으로 참여 가능
- 기본 근로조건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여 등은 협동조합 내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임직원의 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300%로 제한
- 근로조건과 급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관, 규약 등에 명시

□ (임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활근로사업 수탁운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장을 겸직

-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2차에 걸쳐 연임 가능
- 모법인 대표 등 지역사회자원 동원 능력이 있는 인사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사장과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을 규약에 명시
- 직원 중 1명 이상은 이사로 선임

□ (자산) 지역자활센터 명의 자산의 정리

- 기존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비품의 소유는 국가로 하고, 자활근로사업 위탁 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무상임대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자활근로사업 위탁 종료 시 국가 및 지자체로 반납
- 출자금, 정부사업위탁사업비, 자활근로 매출액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협동조합 소유로 관리

□ (협동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합원 출자금 및 정부사업수탁사업비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 매출액 중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준비금을 제외한 매출액 전액

-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한 기타 정부사업수탁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 협동조합 운영비는 협동조합 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 (자활근로위탁)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 후 정부사업위탁사업비 지원(5년, 재위탁 가능)
-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운영비 대비 지원금액 100%에서 50%까지 다운슬라이딩 적용
 - 자활근로사업을 수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예산 지원
 - 자활근로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관리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과 (시장형, 서비스형) 관계없이 7:3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 (매출액) 매출액은 협동조합 자원으로 사용하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준비금제도 도입
- 매출적립액의 20%를 내일키움통장가입자를 위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
 - 매출액을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협동조합 자원으로 하되, 협동조합 규약에 명시
 - 매출액 중 10%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준비금으로 적립
 - 자활기업창업준비금은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고(개인창업 제외), 3년 이내에 창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합의 시설보강비로 활용
 - '14년까지 적립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금은 해당 사업단이 해체 또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때까지 별도 관리
- (성과목표) 성과목표 산정 및 평가 진행
- 조합원 가입률, 취·창업률, 협동조합 자체 고용률, 자활근로참여자 성과급 지급률, 자활근로 매출액 등

- 지역 및 인원수에 따라 달성률 등 비교
- 전환한 협동조합은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협동조합 간 사업 및 성과평가만 시행**
 - 협동조합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제외하고 인센티브 지급
 - 협동조합 간 평가를 통해 우수 조합은 **자활근로 사업비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미흡 기관은 비율 축소 또는 위탁사업비 축소 등 조치
- 성과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을 자문 위원단과 협의하여 마련

□ 시범사업 인센티브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지원
-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 위탁계약(5년)

□ 시범사업 모니터링 진행

- 매월 시범사업 추진 실적 공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단 회의
 - 해당 지역자활센터와 컨설턴트는 진행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 매월 초에 전월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보고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완료 및 컨설팅 점검

-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는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14년 말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완료**
- 시범사업 초기 단계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실시 후 5개월이 종료된 시점에 컨설팅 진행 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 반영

Ⅳ. 기능전환 시범사업

IV. 기능 전환 시범사업

1. 기능 전환 시범사업 개요

□ 공모방법

- 1개 기초지자체에 2개 이상 복수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에 한해 제한적 공모 형태로 진행
- 시범사업 공모 및 유형 선택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성 보장

□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방안

공통사업	선택사업	
자활사례관리(자산형성 포함)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상담, 홍보, 기초교육 등 긴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A	사회서비스 사업형
	B	시장진입 사업형
	C	일자리 연계형(인턴형 자활근로)
	D	사회통합 사업형

- 지자체 내 복수 지정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증대 도모
- 자활사례관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상담, 홍보, 기초교육 제공, 긴급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사업**으로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활사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형성하기 위한 소득보전형 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형 프로그램(A형)**
- 시장진입형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시장진입 사업형 프로그램(B형)**

- 취업장애요인 제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현행 인턴형 자활근로 보완·확대를 통한 취업 연계지원의 **일자리연계형 프로그램(C형)**
-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통합 사업형 프로그램(D형)**
- **(특화사업 개발)** 사업 선택 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
 - 지역자활센터가 각각의 역할에 맞는 선택사업을 선택한 후에 지역적, 사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 가능

2. 시범사업 유형 선택

-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합의하에 사업유형 선택
- 2개 설치지역은 A+(C 또는 D), B+(C 또는 D) 중 하나를 각각 선택
- 3개 설치지역은 A, B, C+D 중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사업 수행
- 그 외 해당 지역별 센터 간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 제안도 가능**

1] 공통사업

- **(필요성)** 지역자활센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유 역할 필요
- **(목표)** 개인별 자활경로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gateway/사례관리)
 - 긴급구호로서 노동기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 일자리 제공
 - 유형에 맞는 전문 교육체계 수립, 상담과 홍보 등 기본업무 수행
- **(긴급일자리 프로그램)** 비수급 빈곤층의 일시적인 실업 등에 따른 일자리 방식의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 **단기간 자활근로**에 참여
 - 기본 참여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에서 조정(행정소요기간에 따라 조정)
- **(자활사례관리)** 인테이크, gateway 프로그램 참여, 자립지원, 사회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 개인별 자활경로 수립, 참여자 욕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연결, 정보제공, 자활 장애요인 제거 복지서비스 제공, 자산형성지원 등
-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 자산형성 사업도 사례관리 범주에 통합하여 진행
- 시범사업 지역 사례관리는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초기 단계 중심으로 1개 기초지자체별로 센터간 **통합운영시스템** 마련하여 운영
- (인적자원개발) 자체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문학, 근로능력 고취,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상담, 홍보, 기초교육 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 수행

② 사회서비스 사업형(선택사업 A)

- (필요성) 사회서비스 개발, 공급해온 축적된 경험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자활센터 활동 영역 확대 가능
- (목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 확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보전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
- (프로그램 및 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개발 및 운영(지자체 포함)
 - 중앙부처 사회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주거현물급여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및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영역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자활, 자립 경로 지원
 - 별도의 지자체 위탁사업이나 특화된 영역 사업 등 지역연계형 사업개발 추진

- **(추진 과제)** 중앙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에 지역자활센터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보 필요
 - 정부 재정 투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공동 개발 및 민·관 연계로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 진행
- * 예 : 지자체 DM 발송, 수급자 이사지원서비스 등

③ 시장진입 사업형(선택사업 B)

- **(필요성)** 자활기업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조직화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축적된 경험 활용 가능
 - 자활기업의 지역 내 규모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 **(목표)** 자활기업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
 - 시장진입형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실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취·창업 지원
- **(프로그램 및 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의 규모화 및 질적 발전,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자활기업에 준하는 형태 운영방안 모색 하고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의 연계망 구축 지원
 - 자활기업이 경과적 일자리 및 직업 경험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경제 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컨설팅을 통한 개인 창업 지원
- **(추진 과제)** 사회적경제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및 사회적프랜차이징을 조직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자체 위탁, 정부조달 등 공공구매 우선 구매제도 지원책 강화

④ 일자리연계형(선택사업 C)

- (필요성) 저소득 빈곤층에게 특화된 지역자활센터의 장점을 활용해 일자리를 원하는 빈곤층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용센터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 (목표) 취업을 희망하는 빈곤층의 취업 연계 및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취업 연계 실현
- (프로그램 및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제공기관으로서 혹은 사전단계 수행기관으로서의 프로세스에 맞게 사업 운영
 - 현행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을 보완·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취업을 연계하고 사업단 형태 운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은 9:1 적용
 - 취업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사례관리 및 재무관리 등 수행
- (추진 과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추진

⑤ 사회통합사업형(선택사업 D)

- (필요성) 노동시장에 진입할 조건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동진입 가능성 확대
- (목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사회통합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역량강화, 알코올치료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운영
- (프로그램 및 사업) 근로미약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노숙자 등 지역 내 소외계층 등 특정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현행 근로유지형을 위탁받아 사회통합형 신규 자활사업 개발 추구
- (추진 과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부업장 등 근로미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3.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및 중간 평가

- 시범사업 수행기간 동안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모델 개발과 빈곤층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재설정하고, 성과지표 및 인센티브 방안 등을 보완

○ 성과평가

-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 간 성과평가 진행
- 개별 센터가 아닌 지역 전체 자활사업의 총량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와 자활센터를 동시에 평가

V.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V.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자문위원단 구성('14. 6월)
 - 복지부, 중앙·광역자활센터, 자활협회, 연구자, 사회적경제 전문가
 -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 매뉴얼 작성 및 중간평가 등 담당
 - 컨설팅 담당 기관도 자문위원단 참여 및 중앙자활센터와 MOU 체결
 - * 신나는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등
 - 현장설명회 이전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 시범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 확정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의견 반영
 - 현장에서 제기할 문제와 이에 대한 답변 준비 필요
- 지역자활센터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7.4일 예정)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및 법인 유형 전환 시범사업 희망센터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후 선정
 - 공모기간 : 7월 7일 ~ 7월 20일(14일간)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시범사업 기관 선정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최종 선정
- 자활사업전환모델 개발 시범사업 시행('14. 8월~)
 - 기능전환 및 유형전환 시범사업 수행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수행
 - 향후 운영계획 및 확대 방안 수립

〈붙임〉

- 1.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일정(안)**
- 2. 기존 자활사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비교표**
- 3. 사회적 협동조합 표준 정관(안)**
- 4.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비교표**

붙임 1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일정(안)

일정	내용	비고
6월 27일	사업 설명회 I	대전(대전복지재단 9층 대회의실) - 복수설치 지역 지자체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희망 지자체
7월 4일	사업 설명회 II	- 복수 설치 지역자활센터 - 법인 전환 희망 지역자활센터
7월 7일 ~ 7월 20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대상
7월 21일 ~ 7월 25일	심사 및 선정	서면 및 면접심사(현장실사 포함) 심사위원회 및 컨설턴트 참여 시범사업 수행기관 컨설턴트 배정
7월 29일 ~ 7월 30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시범사업 수행기관 전체 집합교육 시범사업 세부계획
8월 1일	시범사업 실시	참여기관별 컨설팅 진행
8월 ~ 11월	현장모니터링 수행기관간담회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12월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컨설팅 기관 진행
	중간평가 보고서	참여기관별 평가서

붙임 2

기존 자활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비교표

내 용	기 존	시범사업	비 고
운영방법	지정제	위탁계약제	
자활근로 위탁	1년 계약	5년 계약	
사업주체	모법인 위탁	독립법인(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직원)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 기존 실무자 고용 승계 - 자활기업 참여자(선택)	
직원 급여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 규정	-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 규정을 참고하여 협동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함 - 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300%를 초과 불가능	
직원의 채용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협동조합 내부 규정	
호봉산정	경력환산기준표 및 직급별 기준 호봉	- 경력환산기준표 준용하되 협동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함 - 기준 호봉 폐지	
직원의 규모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	협동조합 내부 규정	
대표자 임기	제한 없음	4년(2회에 한해 연임 가능)	
자산 소유권	국가 및 지자체	- 자활근로사업비 : 국가 및 지자체 - 수탁사업비 : 협동조합	
운영비	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조합원 출자금 - 정부사업수탁사업비 - 자활근로 매출액 중 일부 - 협동조합 사업 매출액	
자활근로 사업 구성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80% 이상 유지	협동조합 자율 구성	

차상위자 참여 비율	- 도시형 : 30% - 도·농복합형 : 40% - 농촌형 : 50%	비율 제한 없음	
자활근로 사업비	- 유형별 비율 상이 (시장형 7 : 3, 사회서비스형 8 : 2) - 유형별 통합사용	- 유형 구분 없이 7 : 3 - 유형 구분 없이 통합사용	
자활근로 매출액 관리	매출적립액 - 중앙자산키움펀드(20%) - 자활기업창업지원금(60%) -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20%) 직접사업비 초과·휴일근무수당 수익금	- 중앙자산키움펀드 (매출적립액 20%) - 자활기업창업준비금 (총매출액 10%) - 자활근로참여자 성과금(자율) - 협동조합 자율 사용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활근로사업비 :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 수탁사업비(보조금), 매출액 ; 협동조합정관으로 규정	
자활기업 창업 지원금	사업단별 자활기업 창업 시 사용	자활기업 창업 시 통합 사용	
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 자립성과금 - 자활기업창업자금 - 비수급자활기업참여자인건비	협동조합 자율 사용	
14년까지 자활기업 창업 지원금 및 수익금	사업단 별 사용	사업단별 별도 관리 후 자활 기업 창업 시 지원, 잔액 반납	
성과평가	- 지역자활센터 전체 대상 성과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디센티브 부여	- 지역자활센터 전체 성과평가 제외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기능전환 시범사업은 현행 자활사업안내의 변경 없이 수행하며,
다만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을 9 : 1로 함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생산·협동·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로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직원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7. 생산자조합원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출자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은 ○○○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

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

제4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〇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6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업

제53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 이어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사업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사업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사업

6. 복지·고용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7. 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위한 교육, 연구 개발 및 출판사업

8. 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위한 컨설팅 사업

9.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고용서비스

10.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2.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

3. 조합원 및 직원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사업 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4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자격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000,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2%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3%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5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0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건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 8 장 회계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0조의1(기부금의 공개)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4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9 장 해산

제6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비교표

(제정 2014년 월 일)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생산·협동·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자립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제4조 서울의 경우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 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 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 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 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 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 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최소 ‘구’단위까지 적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 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 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 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제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u> 2. <u>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로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 자</u> 3. <u>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u> 4. <u>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u>	제9조 2항 1)고용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대상자 층의 특성상 소비자조합원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종류에서 제외함. 2)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유형의 조합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제13조 2항 직원조합원이 퇴사하는 경우와 생산자조합원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정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범인이 해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범인이 해산한 경우 6. 직원조합원이 퇴사한 경우 7. 생산자조합원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0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탈퇴한 조합원은 그해 회계연도말 결산이 끝난 이후에 환급받는 출자금을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다만 다음해에 환급 청구 이후에 언제까지 환급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규약으로 정할 것을 권장.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남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남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〇〇〇원으로 한다. ② 〇〇〇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〇〇〇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출자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〇〇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은 〇〇〇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제17조 2항 현행 법률에는 정관에 출자금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되는 7월 22일부터는 출자금을 정관상에 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함.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4 장 총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대의원총회는 200인이 초과하였을 시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서, 200인이 넘지 않을 예정이려면 정관상에서 삭제 가능.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	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외에 대한 판정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u>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외에 대한 판정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	제3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5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	제 5 장 이사회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1항 간부 직원의 임면은 인사권자의 책임과 권한에 두어서 이사회 승인 사항에서 제외함 (이 내용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표준정관에만 명시된 내용임).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〇〇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임원 제4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〇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	제4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관련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명칭이 바뀌었음.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제4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6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	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1항 주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 제53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u>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u> 2. <u>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사업</u> 3. <u>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사업</u> 4. <u>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사업</u> 5.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사업</u> 6. <u>복지·고용통합서비스 제공 사업</u> 7. <u>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위한 교육, 연구 개발 및</u>	제53조 2항 기타사업 중 1호와 2호는 사업여부에 따라 삭제가능. 3, 4, 5 호는 필수포함사업으로 반드시 정관에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1. 〇〇〇 사업 2. 〇〇〇 사업 3. 〇〇〇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〇〇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구역은 〇〇〇로 한다.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부리 증진을 위하여 제 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u>출판사업</u> 8. 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위한 컨설팅 사업 9.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고용서비스 10.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2. 조합원 상호부조 사업 3. 조합원 및 직원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u>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u>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4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부리 증진을 위하여 제 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포함하여야 함. 제54조 및 제55조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삭제가능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00으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00으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 자격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000,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2%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3%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뉘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제55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뉘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 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0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 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	제56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 22일부터는 비조합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이용이 가능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건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취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건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취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제 됨.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 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 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	제 8 장 회 계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체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체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이사회 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0조의1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 정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조항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기부금의 공개)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 채권자가 제64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의무를 승계한다.	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 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6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 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 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 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 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 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표준정관례	지역자활센터 표준 정관	비고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70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 정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조항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u>보건복지부장관</u>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